

2018년 서울주택도시공사 NCS 기반 신입사원 채용공고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주거 및 공간복지 전문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미래를 함께 펼쳐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직급	직종	채용직무	필수자격증	지원자격(각 호 모두 충족하여야 함)				
6급	사무직 (22명)	경영지원/ 사업관리 (18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단,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병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단, 현역의 경우 단계별 시험응시 및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상세보기2)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직무별 필수 자격증(상세보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직: 제한없음 - 기술직: 공고일 현재 유효한 해당 분야 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공인 영어 성적 자격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는 해외사업 수행 등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을 요구 				
		장애인(4명)						
	기술직 (31명)	토목직 (7명)	일반(6명)		응시분야의 기사, 기술사, 건축사(건축직)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상세보기1)			
			장애인(1명)					
		건축직 (11명)	일반(10명)					
			장애인(1명)					
			기계직(6명)					
			전기직(5명)					
			조경직(1명)					
			환경직(1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경영지원/사업관리</th> <th>기술직</th> <th>장애인</th> </tr> </thead> <tbody> <tr> <td>토익 800점, 토플 637점, 토플 91점 이상</td> <td>토익 700점, 토플 555점, 토플 79점 이상</td> <td>토익 700점, 토플 555점, 토플 79점 이상</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성적은 영어시험 대체와 서류전형에 위한 자격기준으로만 활용 - 영어 성적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5. 5. 이후 국내에서 취득한 시험 성적에 한하며 조회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특별시험, 국외응시 성적,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불합격 처리 • 상기 공인 영어 성적 외 다른 공인 외국어 성적은 불인정함. • 공인 영어성적은 토플 관리 위원회(www.teps.or.kr)에서 최근 작성한 점수 환산표(Conversion table)를 적용하여 산정 • 단, 고급자격증 소지자(상세보기3)는 해당분야 지원시 공인 영어성적 불필요 			경영지원/사업관리	기술직	장애인	토익 800점, 토플 637점, 토플 91점 이상	토익 700점, 토플 555점, 토플 79점 이상	토익 700점, 토플 555점, 토플 79점 이상
경영지원/사업관리	기술직	장애인						
토익 800점, 토플 637점, 토플 91점 이상	토익 700점, 토플 555점, 토플 79점 이상	토익 700점, 토플 555점, 토플 79점 이상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사무직, 기술직 중 토목직무, 건축직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서류전형 면제 (단, 자기소개서 부실기재자는 제외)

- 고급자격증(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 소지자

※ 가산대상 자격증 및 채용우대 지원자격(상세보기4)

- 가산대상 자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가산함.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응시 직무의 가산대상 자격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우대함. 단, 채용 직무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가점을 미부여함.

2. 전형절차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1차 필기시험(전공) → 2차 필기시험(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신체검사 → 결격사유조회 → 임용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 서류전형

- 원서 접수기간: 2018. 4. 27.(금), 09:00 ~ 2018. 5. 4.(금), 18:00

○ 접수방법

- 공사 채용 홈페이지(<http://sh.incruit.com>)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하지 않음.
- 중복접수 불가: 하나의 채용직무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지원 시 모두 무효처리하며 추후 중복 지원으로 판명 시 불합격 처리함.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 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 중이었던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하지 못한(접수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 접수시 작성내용: 응시원서, 역량기반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채용 홈페이지 상에서 체크)

* 입사지원서에 기입한 내용을 증빙하는 각종 서류는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받을 예정

○ 합격기준

- 영어시험 대체인 공인 영어 성적 소지자 중 일정기준 점수 이상인 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자격, 제출서류에 대한 적격 여부만을 확인하여 적격자 전원에게 1차 필기시험 응시 기회 부여
- 고급자격증 소지자는 공인 영어 성적과 관계없이 1차 필기시험 응시 기회 부여
- 단, 자기소개서 부실 기재자(미작성자, 동일내용 반복 기재 등)는 제외함.(고급자격증 소지자도 동일)
* 역량기반 자기소개서는 서류전형시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추후 면접전형 자료로 활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5. 11(금), 18:00 이후

-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채용 홈페이지(<http://sh.incruit.com>)를 통해 발표
(신문공고·개별 통지 등은 하지 않음.)
- 필기시험 일시·장소 등은 합격자 발표시 안내

□ 1차·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① 1차 필기시험

- 대 상: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2018. 5. 20.(일) 예정,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 시험과목: 직무별 관련 전공과목 (상세보기5)

② 1차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합격기준

- 1차 필기시험 성적이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인 득점자 중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각 시험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처리하며,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처리
- *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고급자격증 소지자(5%),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5%)
- * 사무직 및 기술직 중 토목직무, 전기직무 분야의 경우 전공과목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분야별로 조정(표준)점수 적용(상세보기 6)

○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8. 5. 24.(목), 18:00 이후

-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채용 홈페이지(<http://sh.incruit.com>)를 통해 발표 (신문공고 · 개별 통지 등은 하지 않음.)
- 2차 필기시험 일시, 장소 등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③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대 상: 1차 필기시험 합격자
- 일 자: 2018. 5. 26.(토) 예정
- 시험과목: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인성검사

④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합격자 결정

○ 합격기준

- 2차 필기시험 성적이 시험과목 만점의 40% 이상인 득점자 중 가산점을 합산하여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채용인원이 3인 미만인 직무의 경우는 5배수) 범위 내 결정하되, 시험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 발생시 모두 합격 처리
- *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고급자격증 소지자(5%),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5%)
- 2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 인성검사 적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2018. 5. 30.(수), 18:00 이후

-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채용 홈페이지(<http://sh.incruit.com>)를 통해 발표(신문공고 · 개별통지 등은 하지 않음)
- 면접시험 일시, 장소 등은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시 안내

○ 면접대상자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남,여 공통)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공인외국어어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
- 장애인증명서 원본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장애인 분야 응시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및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 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시하여 제출, 자격증 원본 지참)

※ 공인외국어 어학점수,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병역사항 등에 대하여는 추후 관계 기관에 사실 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의 내용 혹은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임용 후에도 당연 불합격 처분하며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면접전형

- 대 상: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합격자
- 일 자: 2018. 6. 4.(월) ~ 6. 7.(목) 중 1일(직무별 상이) 예정 (6. 6.(수) 현충일 제외)
- 면접방법: 직무수행능력 면접(그룹토론), 직업기초능력 면접(인성면접)
- *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점수와 면접시험 점수 합산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성적 순(1차, 2차 필기시험의 평균점수) 등으로 결정
-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6. 15.(금), 18:00 이후**
 -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채용 홈페이지(<http://sh.incruit.com>)를 통해 발표 (신문공고 · 개별 통지 등은 하지 않음.)

3. 유의사항

- 지원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길 바랍니다.
- 학력과 연령 제한이 없으나(단, 공사 정년 범위내 연령이어야 함.) 최종 합격 시에는 재학 등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할 예정이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분은 물론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가산비율은 사전에 본인이 국가 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인터넷 접수 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지원서 제출 전에 자격증 등 각종 기재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오기 또는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중 대리시험, 휴대전화 사용, 옆 사람과의 대화 등은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즉시 퇴장 조치합니다.
- 수습임용 후 최대 3개월간 수습기간을 운용하며 수습직원에게 대해 직무수행 능력 등 평가 후 근무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http://sh.incruit.com>) “질문하기”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T.1600-34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4. 26.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상세보기1 】 채용 직무별 필수자격증

- 사무직(경영지원/사업관리): 별도 필수 자격증 없음
- 기술직

채용직무	직무별 필수 자격증
토목직	기사(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또는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도시계획, 상하수도)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건축직	기사(건축, 실내건축) 또는 기술사(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또는 건축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계직	기사(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일반기계, 기계분야 소방설비) 또는 기술사(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소방)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전기직	기사(전기, 전기공사, 정보통신) 또는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정보통신)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조경직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또는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환경직	기사(수질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또는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장애인(구분모집): 해당 직무별 자격증과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세보기2 】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

公社 인사규정 제13 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 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신원조회결과 직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상세보기3 】 고급자격증의 범위

고급자격증
◇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법무사법 제4조에 의한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상세보기4 】 가산대상 자격 및 채용우대 지원자격

구 분		우대사항 (가산비율 등)	확인방법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매과목 40%이상 득점자에 부여
고급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공인회계사,법 무사,세무사,공인노무 사,감정평가사 자격증 소지자	서류전형 면제 (공인외국어 성적 불필요) 및 1차·2차 필기시험 만점의 5%	자격증 사본	-가산대상 자격이 2개 이상 중복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가산함.
	기술사 또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산대상 자격 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함.
다문화가족 (국적 취득자의 경우 TOPIK 5급 이상 취득자에 한함)		1차·2차 필기시험 만점의 5%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TOPIK성적표(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 하는 사람은 채용직무별 선발예 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북한이탈주민		1차·2차 필기시험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필기시험 가점은 1차·2차(직업기초능력평가) 필기시험에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직무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가산점을 미부여

구 분	적 용 범 위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만 지원 가능 - 국적 취득자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자(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 -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 상세보기 5 】

채용직무		시험과목		비 고
		1차 필기시험	2차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사무직	경영지원 사업관리	법 학: 법학 전반 행정학: 행정학 전반 경영학: 경영학 전반 경제학: 경제학 전반 회계학: 회계학 전반 중 택1		- 전공 출제문항: 과목별 50문항, 객관식 5지 선다형 - 직업기초능력평가: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장애인			
기술직	토목직	일반	토목공학: 토목공학 전반	
		장애인	도시계획학: 도시계획학 전반 중 택1	
	건축직	일반	건축공학 전반	
		장애인		
	기계직	기계공학 전반		
	전기직	전기공학: 전기공학 전반 전자(정보통신)공학: 전자(정보통신)공학 전반 중 택1		
	조경직	조경학 전반		
환경직	환경공학 전반			

신입사원 채용시험 조정점수 안내¹⁾

사무직 및 기술직 중 토목직무, 전기직무 응시생들은 전공과목의 난이도 차이가 발생하므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점수제를 시행합니다.

조정점수란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변환한 점수로, 과목간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보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이도가 높은 과목의 경우 평균이 낮으므로 조정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난이도가 낮은 과목은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정점수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4항 [별표13]

$$\left\{ (\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right\} \times 10 + 50$$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계}}{\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참고로, 선택과목이 도입된 대부분의 국내시험들도 동일한 산식에 의해 조정점수를 산출합니다.

※ 대학 수능시험('99년 도입), 공인노무사('11년 도입), 국가공무원 8, 9급('13년 도입)

조정점수제 Q&A

1. 과락기준(만점의 40% 이상)은 어떻게 정하는지?

-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40점 이상) 과락을 면한 것으로 봅니다.
- 사시, 노무사 시험도 원점수와 조정점수 어느 하나라도 40점 이상일 경우이면 과락이 아닌 것으로 인정

1)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 조정점수 안내 및 Q&A를 활용하여 제작성함

(예시) 경영학 : ① 원점수(35점), 조정점수(41점) → 과락 아님
 ② 원점수(40점), 조정점수(37점) → 과락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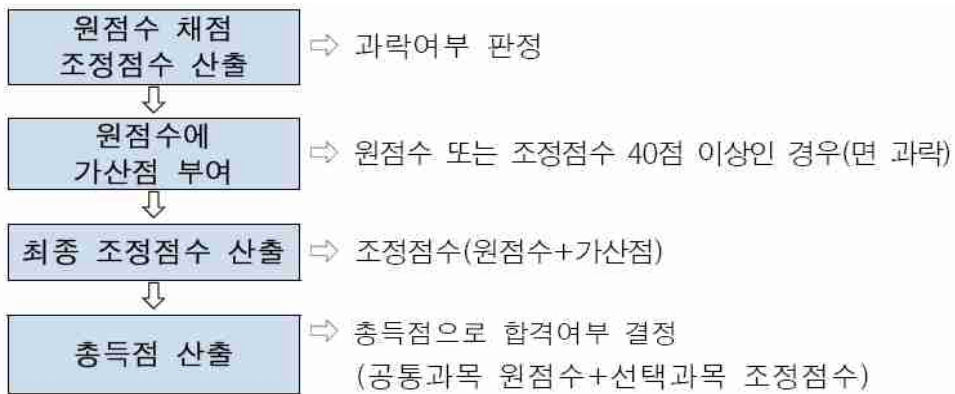
2. 가산점 부여시기 및 부여 절차는 ?

-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이를 조정점수로 전환해 최종 성적을 산출합니다.
-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과목간 가산점이 상이하고, 과목내 원점수 순위가 변동되는 문제 발생(조정점수를 도입하더라도 과목내 순위는 동일해야 함)

< 예 시 >

구분	원점수 (가점) A	순위	원점수+가점 ⇒조정점수 B	순위	원점수 ⇒조정점수+ 가점 C	순위
가	91(1)	1	67.76	1	68.82	2
나	90(0)	2	67.33	2	67.82	3
다	85.5(10.5)	3	65.40	3	71.77	1

- 원점수에 먼저 가산점을 더한 후 조정점수로 전환하는 B의 경우 원점수와 순위는 동일, 원점수를 조정점수로 전환한 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C의 경우는 순위 변동
- 가산점 부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조정점수 산출시 원점수 100점이 70점이 되는 등 점수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 조정점수는 서로 다른 시험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의 성적을 동일한 척도 상에서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조정점수의 크기는 과목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따라서, 조정점수 산출시 반드시 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 표준편차, 개별 수험생의 성적에 따라 상승할 수 있습니다.